

기안용지

부속령

문류기호 문서번호	법무1외.7~ (전화번호 55-6379)	전 결 규 정	조 랑 사 랑
처리기간	466	시 강	
시행일자	80. 4.		
보존년한			
보조기관	제1부시장 기획관리반 법무담당관	법제계장 450	
기안책임자	이달주	80. 4. 24	
경수참조	유신조	각안참조	
제 목	서울특별시 경찰국 위급전결 규정중 개정규정		
(제1안) 내부결재			
제 목 같은 건			
광고물등 관리법 (법률 제 3227 호 80. 1. 4) 이 개정되어 본 업무가 경찰국장으로 부터 구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찰국 위급전결규정을 별첨(안)과 같이 발령시행코자 합니다 철 부 서울특별시 경찰국 위급전결 규정중 개정규정 (안) 1부 품			
(제2안)			
수 신	문화공보관		
제 목	시보게재의뢰		
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경찰국 위급전결 규정중 개정규정을 발령하였기 통보하니 시보에 게재조치 할 것 철 부 서울특별시 경찰국 위급전결 규정중 개정규정 공포안			

0917

(제 3안)

구 신 서울특별시경찰국장

참 조 경 무 과 장

제 목 훈령발령통보

서울특별시 경찰국 키임전결 주정중 개정주정을 별첨과같이
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착수 하도록 할 것

첨 부 서울특별시 경찰국 키임전결 주정중 개정주정 공문안 1부 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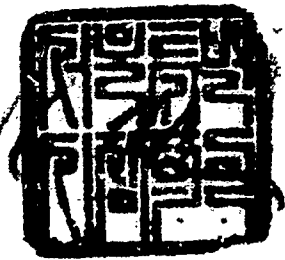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경찰국 위임전경규장총 경정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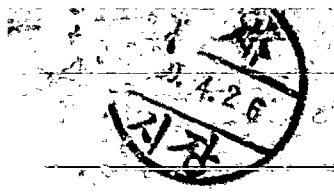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

197 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

장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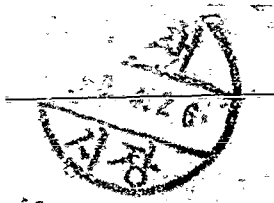
1. 계 정 이 유

종교문동 관리법 (법률 제 3227 호 80. 1. 4)의

계정 공포로 본 업무가 시, 군, 구도 이관됨으로 계

정함.

251



2. 개 정 야

서울특별시 규정 제 호

서울특별시 경찰국 위임전결 규정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경찰국 위임전결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조 기능별 보안증 양면번호 17의 광고를 설치 허가
및 정비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3. 신규 대조표

구	신
<p>범포</p> <p>보안</p> <p>17 광고를 설치하기 및 정비</p>	<p>범포</p> <p>보안</p> <p>17 (삭제)</p>